

대전지방법원 2023. 1. 18 선고 2022가단13426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기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균

변 론 종 결 2022. 12. 21.

판 결 선 고 2023.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20. 11. 30. 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3,161,089원 및 그 중 76,000,000원에 대하여 2022. 7. 9.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연 11.46%의 이자를 합산한 금액과 위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3. 9. C에게 가계일반자금 7,600만 원을 대출받기 2021. 9. 13.,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배상금율 연 12%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

나. C은 2020. 11. 30. 피고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서 C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2020. 12. 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고, 2020. 12. 10.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갑 1~3호증, 을 1호증의 1~3, 을 2호증의 1, 4, 을 4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는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이다.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으로 C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C의 배우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후 선순위 근저당권이 해지되고 하나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을 4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C 명의의 재산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 외에 청주시 상당구 E 토지와 그 지상 연와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 및 목조 세멘기와지붕 단층 주택(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있고 나서 9개월 후인 2021. 8. 30. C의 어머니인 F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C이 보유하고 있던 별건 부동산의 가액이 이 사건 대출원리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별지

. . .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아파트 I동

[도로명주소] 천안시 서북구 J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천안시 서북구 G 대 40,736.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K

건물내역 철근콘크리트조 79.131㎡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종류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40,736.8분의 72.0839. 끝.

